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등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0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1.
3. 회부연월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조의4(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u>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실시·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 수요에 신속하게 대

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잇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도 점차 확대되어 2023년 12월 기준 총 16,490개소가 지정되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정대상 6,326개소 중 6,295개소가 지정되어 지정률이 99.5%에 달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2023. 12.)]

(단위 : 개소)

시설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	어린이집	학원	기타 ※ 외국인 학교 등
			일반	병설				
지정대상	24,277	6,326	3,240	4,222	188	7,393	2,863	45
지정개소 (지정율)	16,490 (67.9%)	6,295 (99.5%)	2,642 (81.5%)	4,188 (99.2%)	176 (93.6%)	3,065 (41.5%)	94 (3.3%)	30 (66.7%)

자료: 경찰청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 문제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현행 법체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연도별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음.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③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거나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5.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지정·관리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청, 도로관리청,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므로, 해당 협의회 상설화 및 활동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관하여 우선 기존의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되,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소관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해당 법률에 별도 협의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